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철호¹, 강상구^{2*}

¹충북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²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임연구원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Research on the Employment Effect of Minimum Wage

Cheol-Ho Park¹, Sang-Goo Kang^{2*}

¹Business School, Associate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²Korea E-Trade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 Chung-Ang University

요 약 최근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계는 신뢰할만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의 경향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연실험 또는 메타회귀분석법을 활용하는 최근의 해외 연구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국내 연구들은 아직 그 수요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자료나 분석기간, 연구모형 등에 따라 고용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변화의 내생성 문제, 경제상황과 고용변화의 추세를 적절히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해야 하며, 해외 연구들에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시기를 전후한 자연실험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최저임금, 고용효과, 저임금노동자, 빈곤선, 수요독점노동시장

Abstract Recently the Korean society has suffered severe conflicts over the rate of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while academics have failed to provide appropriate standards through reliable research. Recent foreign studies using natural experimentation or meta-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increase in minimum wage has little effect on employment. Domestic studies are not yet numerous in number, and they present different conclusions on employment effects depending on the data used, sample period, and research model. To properly assess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minimum wage, future studies should minimize measurement errors in minimum wage dataset, and appropriately consider the endogenous change of minimum wage, economic situation and trends of employment changes. It is also necessary to utilize natural experiment methods before and after the increase of the minimum wage.

Key Words : Minimum wage, Employment effect, Low-wage workers, Poverty line, Monopsony

1. 서론

1986년 국내에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

다. 최저임금제도의 바람직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적정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해마다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양 진영 간에 현격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적어도 1만

* Corresponding Author : Sang-Goo Kang(iamgooya@hanmail.net)

Received July 30,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September 11,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원으로 인상해야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가 빈곤이 완화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경영계는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률의 감소와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고 최저임금의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을 주장한다. 정부도 당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급격한 인상률에 따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반발이 커지자 최근 이를 수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경제이론이나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어온 주제이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가정하는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고용량(특히, 비숙련 노동자들의 고용량)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비숙련 노동을 숙련 노동으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이 노동력에 대해 수요독점력을 갖는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최저임금이 더 높게 책정될수록 노동수요 독점기업이 고용을 억제하려는 유인이 약화됨으로써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될 수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이론들이 존재함에 따라, 이 문제는 결국 실제 사례나 자료를 통해 밝혀야 할 실증적인 문제가 되었다.

국내외 실증연구의 결과는 분석 기간 및 자료, 연구방법론 등에 따라 엇갈린다. 그럼에도 최근 해외에서 발표되고 있는 다수의 실증연구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국내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자료의 형태나 연구방법론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다. 사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관련학계가 공히 신뢰할만한 연구를 제시하지 못한 탓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문헌들을 심도있게 고찰하는 것을 통해 관련연구가 고려해야할 적절한 방법론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최저임금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적정성을 파악한 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이론들을 논의한다. 또한 최근까지 수행된 국내외 실증연구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비교함으로써 국내 연구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국가 간 최저임금 수준의 비교에는 구매력의 국가별 차이를 고려한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의 최저임금 수준과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이 주로 활용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일제(full-time) 노동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비교를 위한 기준이 된다. Table 1의 왼쪽 열들은 OECD 국가별 구매력과 환율의 차이를 고려한 201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 구매력평가환율(USD PPPs)은 비교국 통화의 대외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국에서 \$1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비교국 시장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구매할 때의 가격으로 평가한 환율이다. 2016년도 우리나라의 달러화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5.8이며, 구매력을 고려할 경우 \$5.3로 나타났다. 이는 32개 OECD 국가들 중 각각 중간 정도의 순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국의 임금제도, 노동력 구성, 임금계산방식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임금의 절대수준을 비교하는 것보다 상대적 수준을 비교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방법은 평균임금이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살펴보는 것이다.

Table 1의 오른쪽 열들은 2016년도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40% 또는 중위임금 대비 50%인데, 이는 OECD가 조사한 31개 국가들 중 각각 중하위권에 속하는 것이다.

OECD국가들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8개 국가들(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은 상당수 노동자가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임금최저선의 적용을 받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순위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일본과 미국은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로서,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주별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주가 2015년 2월 기준 30개 주나 된다[1,2].

Table 1. Comparison of the minimum wage of OECD countries

Rank	Real minimum wage(2016)				Minimum relative to average wages of full-time workers(2016)			
	In 2015 constant prices at 2015 USD PPPs		In 2015 constant prices at 2015 USD exchange rates		Mean		Median	
1	France	11.2	Australia	13.0	Colombia	0.57	Colombia	0.86
2	Australia	11.1	Luxembourg	12.1	Costa Rica	0.56	Costa Rica	0.79
3	Luxembourg	11.0	France	10.7	New Zealand	0.51	Turkey	0.76
4	Germany	10.3	New Zealand	10.5	France	0.49	France	0.61
5	Belgium	10.2	U.K.	10.3	Slovenia	0.48	New Zealand	0.61
6	Netherlands	9.9	Ireland	10.1	Chile	0.47	Slovenia	0.59
7	New Zealand	9.3	Belgium	9.8	Australia	0.45	Israel	0.58
8	Ireland	9.1	Netherlands	9.7	Luxembourg	0.44	Portugal	0.58
9	U.K.	8.4	Germany	9.4	Poland	0.43	Romania	0.57
10	Canada	8.1	Canada	8.5	Lithuania	0.43	Luxembourg	0.55
11	Japan	7.4	U.S.	7.2	Turkey	0.43	Australia	0.54
12	U.S.	7.2	Japan	6.7	Belgium	0.42	Poland	0.54
13	Slovenia	7.0	Israel	6.6	Israel	0.42	Lithuania	0.54
14	Israel	5.9	Korea	5.3	Portugal	0.42	Hungary	0.51
15	Turkey	5.8	Slovenia	5.1	Germany	0.42	Latvia	0.51
16	Korea	5.8	Spain	4.2	Romania	0.41	Belgium	0.50
17	Poland	5.7	Greece	3.7	U.K.	0.41	Korea	0.50
18	Spain	5.1	Portugal	3.4	Latvia	0.41	U.K.	0.49
19	Greece	4.7	Turkey	3.2	Canada	0.40	Greece	0.48
20	Portugal	4.5	Poland	2.8	Korea	0.40	Slovak Rep.	0.48
21	Hungary	4.4	Estonia	2.7	Hungary	0.39	Germany	0.47
22	Czech Rep.	4.2	Costa Rica	2.6	Slovak Rep.	0.39	Canada	0.46
23	Estonia	4.1	Czech Rep.	2.4	Ireland	0.39	Chile	0.46
24	Lithuania	3.9	Latvia	2.4	Netherlands	0.38	Ireland	0.45
25	Latvia	3.8	Hungary	2.3	Estonia	0.35	Netherlands	0.45
26	Costa Rica	3.7	Lithuania	2.2	Japan	0.35	Estonia	0.41
27	Slovak Rep.	3.5	Slovak Rep.	2.1	Czech Rep.	0.34	Czech Rep.	0.40
28	Chile	3.0	Chile	1.9	Greece	0.33	Japan	0.40
29	Colombia	2.4	Brazil	1.2	Spain	0.31	Mexico	0.37
30	Brazil	2.0	Colombia	1.1	Mexico	0.29	Spain	0.37
31	Russian Fed.	1.3	Mexico	0.6	U.S.	0.25	U.S.	0.35
32	Mexico	0.9	Russian Fed.	0.5				

Source : OECD(<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N2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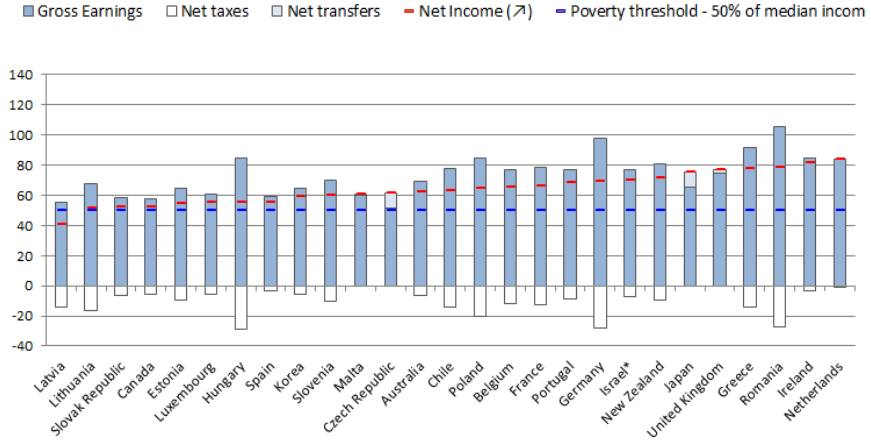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는 또 다른 방법은 최저임금노동자가 포함된 가구를 가구형태별(독신, 한 부모 두 자녀, 홀벌이 두 자녀 등)로 분류하고, 각 가구형태의 평균소득(총소득 또는 순소득)이 균등화된 중위가구소득(median household incomes)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것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Fig. 1 (a)는 자녀가 없는 독신자가 최저임금노동자일 때, 이 가구의 소득이 중위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막대는 총소득 기준의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며, 빨간 점은 총소득에서 조세부담액과 순이전소득(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소득으로 연금, 수당, 급여 등을 포함함)을 가감한 순소득 기준의 중위가구소득 대비 비율이다. 2015년 한국의 독신 최저임금노동자의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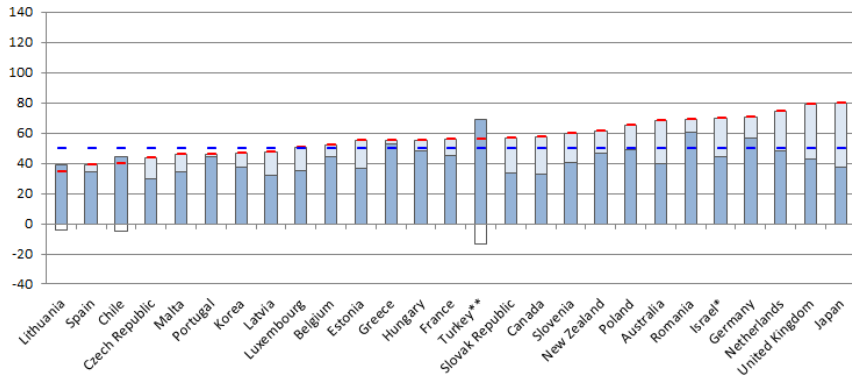
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중위소득의 64%로 전체 27개 OECD 국가들 중 9번째로 낮으며, 순소득을 기준으로 도 중위소득의 59%로 역시 9번째로 낮다.

Fig. 1 (b)는 ‘한 부모, 두 자녀’ 가구의 한 부모가 최저임금노동자인 경우, 이 가구의 소득이 중위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국의 ‘한 부모, 두 자녀’ 가구의 최저임금소득은 중위소득의 37%로 27개국 중 9번째로 낮다. 순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7%로 라트비아와 함께 7번째로 낮고, 중위소득의 50%를 나타내는 빈곤선 아래에 위치한다. 이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보다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낮았던 캐나다, 슬로바키아의 순이전소득이 중위소득의 21~23%를 차지해 한국의 10%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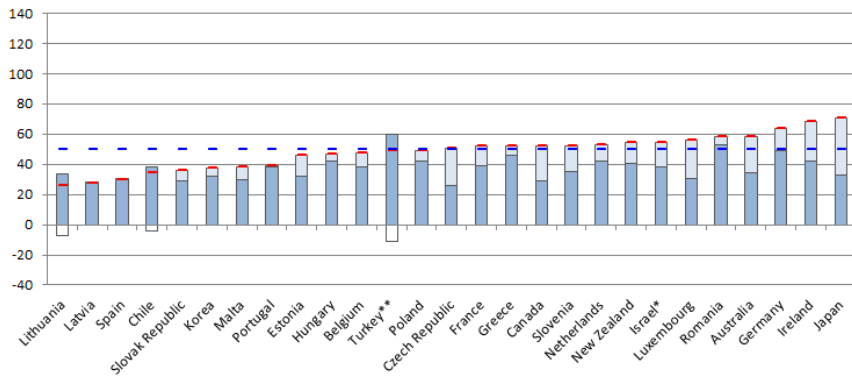
(a) Single, no children



(b) Lone parent, two children



(c) One earner couple, two children



Source : OECD(<http://www.oecd.org/els/soc>).

Fig. 1. Income levels provided by full-time minimum wage employment(2015)

Fig. 1 (c)에 나타나 있는 ‘홀벌이, 두 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총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32%, 순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38%로 각각 27개국 중 9번째와 6번째로 소득이 낮으며, 빈곤선보다 한참 아래에 위치한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노동자가 포함된 3가구형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있으며, 특히 ‘한 부모, 두 자녀’ 가구 또는 ‘홀벌이, 두 자녀’ 가구의 경우 낮은 임금을 보충할 만큼 공적이전소득이 충분치 않아 해당 가구들의 소득이 빈곤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저임금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수준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3.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이론

완전경쟁 노동시장 모형으로 잘 알려진 신고전학파 모형은 동질적인 수많은 노동자들과 이들을 경쟁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용자(기업)들을 가정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될 때, (비숙련)노동자들의 노동공급량은 증가하는 반면 기업의 노동수요량은 감소하여 노동의 초과공급(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의 노동에 대한 한계비용은 추가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Fig. 2에서처럼 수요독점기업의 한계노동비용곡선(MRC)은 노동공급곡선 S보다 위쪽에 위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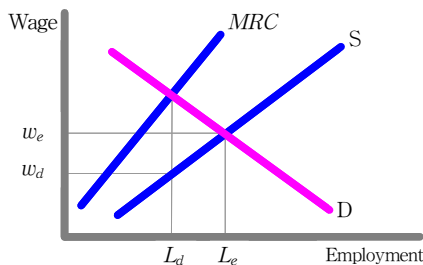


Fig. 2. Monopsony model of the labor market

수요독점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에 대한 한계비용(MRC)과 수요곡선(또는 한계수입생산(marginal revenue product, MRP))이 만나는 L_d 만큼의

노동량을 고용할 것이고, 이 때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은 w_d 가 된다. 경쟁시장에서의 고용량과 임금수준은 각각 L_e 와 w_e 이므로,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수요독점기업은 경쟁시장 수준보다 더 적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에 의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 때 만약 최저임금이 수요독점적 임금수준 w_d 와 경쟁시장 임금수준 w_e 사이에서 결정된다면, 고용량은 증가하게 된다. 최저임금을 w_e 로 책정하게 되면 고용량은 경쟁시장 수준인 L_e 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w_e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고용량은 경쟁시장 하에서의 고용량 수준 아래로 감소하게 된다.

노동에 대한 수요독점력은 다양한 수준에서 존재할 수 있다. 순수 수요독점의 경우 노동시장에 하나의 사용자만 존재하므로 수요독점력이 극대화된다. 몇몇 기업들이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수요독점력이 발생한다.

기업이 노동에 대해 수요독점력을 갖는 현상은 노동시장에서의 마찰요인, 효율임금이론, 탐색이론 등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옮기는데 따른 비용이 상당하여 노동자의 전직을 제약하는 경우 수요독점력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은 완전탄력적이지 않은데, 사용자가 임금을 내리더라도 모든 노동자들이 즉시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는 것이 그 예다. 이 경우 기업은 장단기에 걸쳐 노동에 대해 일정한 수요독점력을 갖게 된다.

효율임금이론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의 근무실태를 완전하게 감시하기 어려운 경우 높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근무태만의 유인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수의 노동수요자가 존재하더라도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할 수 있다. 탐색이론의 관점에서도 노동수요자와 공급자가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탐색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노동자를 더 쉽게 채용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므로 수요독점력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에 대한 수요독점력이 존재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일정수준까지는 고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이 경쟁적인지 혹은 수요독점적인지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4. 국내외 실증연구에 관한 고찰

1990년대 이전에 발표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대표적인 실증연구는 Brown *et al.*(1982)이다. 저자들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행된 최저임금에 관한 방대한 양의 이론 및 실증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10대들(16~19세)의 고용은 대체로 0~1.5% 감소하고, 청년층(20~24세)의 고용은 10대들보다 적게 감소하며, 성인들(25세 이상)의 고용에 대한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도 여러 경제학 교과서에 실릴 만큼 최저임금의 전형적인 고용효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Card and Krueger(1994)는 고용효과에 관한 신고전학과 이론이나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에 반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1992년 미국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인상이 패스트푸드 산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시기를 전후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주와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인접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의 410개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에 대해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인상이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의 고용을 감소시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에 비해 11.0~16.8% 가량 고용이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후 Neumark and Wascher(2000)는 Card and Krueger가 사용한 고용자료가 임금대장에 있는 것보다 매우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대장을 이용하여 다시 추정하면 뉴저지주의 임금인상은 펜실베이니아주에 비해 약 4.0% 정도 고용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인접 지역의 최저임금 차이를 이용한 초기연구들의 문제점은 지역별 고용성장의 차이나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다른 여러 주 또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들[6-8]은 지역별 고용성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 감소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를 고려했을 때는 고용감소의 효과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특히, Hirsch *et al.*(2015)은 음식점 운영자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면접자료를 분석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상품가격의 인상, 내부 임금구조의 변화(고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인상의 지연 등), 임금 외 비용의 절감과 고객서비스의 축소, 이익 감소, 생산성 증가 등을 통해 흡수된다는 결과를 제시하

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주로 메타회귀(meta-regression) 분석법을 사용하고 있다. 메타 분석은 유사한 주제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자료의 양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켜 개별 연구에서 가능했던 것보다 더욱 명확하게 변수들 사이의 통계적 관계를 추론하는 방법이다. Table 2는 메타분석법을 사용한 최근의 연구들을 요약한 것이다. Boockmann(2010)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량을 미약하게 감소시키거나 고용량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Table 2. Studies using meta-analysis on the employment effect of minimum wages

Study	Studies in the Sample	Country(ies) and Sample Period	Effect on Employment
Doucouliaqos & Stanley(2009)	64	USA, 1972~07	No effect
Boockmann (2010)	55	15 industrial countries, 1995~07	Negative but different
Nataraj <i>et al.</i> (2014)	17	15 low-income countries, 1991~11	Ambiguous
Leonard <i>et al.</i> (2014)	16	UK, 1994~12	No effect
Belman & Wolfson(2014)	23	USA, 2000~13	Small negative
Broecke <i>et al.</i> (2015)	26	10 emerging countries, Not specified	No effect
Giotis & Chletsos(2015)	45	Various countries, 2010~2014	Small negative

국내 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시도되었다.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가 해마다 주요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국내문헌들의 연구결과 또한 분석 기간, 사용된 자료와 분석방법 등에 따라 엇갈린다. Table 3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국내문헌을 정리한 것이다.

국내 초기연구들은 대체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별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16-18]. 이병희(2008)는 이러한 결과가 낮은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영향률을 반영한 것이며, 저임금 노동 시장에 마찰에 의한 노동수요 독점력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남성일(2008)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2007년의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최

저임금제의 도입으로 임금은 상승하였지만 고용과 근로 시간은 감소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특정 직업군에 대한 단기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Table 3. Studies on the employment effect of minimum wages in Korea

Study	Time-Period Analysed	Data	Effect on Employment
Lee(2007)	2000~2006	ASTE, WPS	Positive or no effect
Nam(2008)	2005~2007	Data on APTs' security guards	Negative
Lee(2008)	2003~2005	ASTE, EAPS	No effect
Jeong <i>et al.</i> (2011)	1998~2008	KLIPS	No effect
Kim(2012)	2008~2010	SLCET	Negative
Kim <i>et al.</i> (2013)	2000~2008	KLIPS	Mixed
Kim & Kang (2015)	2001~2012	ASTE	Positive
Kang & Park (2015)	2001~2013	ASTE	Negative
Lee & Hwang(2016)	2006~2014	SLCET	Negative
Hong(2018)	2018	EAPS, LFS, WID	No effect

Note: ASTE(an additional survey by type of employment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EAPS)); SLCET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s); KLIPS(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PS(the workplace panel survey); LFS(labor force survey at establishments); WID(working insurance data).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연구들은 자료의 가공 형태 또는 연구방법론에 따라 부정적인 고용효과¹⁾를 보고하거나[20~22],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23]. 특히, 강승복·박철성(2015)과 김영민·강은영(2015)은 분석 자료와 기간이 거의 같음에도 자료 형태 및 연구모형의 차이로 인해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전자는 원자료로부터 Kaitz지수(“각 산업의 고용 비중과 최저임금 영향을 가중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시계열자료를 만들어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으로 분석한 반면, 후자는 패널 원자료에 이항 프로빗(probit)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내 연구들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원인은 국내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수혜노동자수와 그 비율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조사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여러 가지 조사자

1) 이러한 부정적 고용효과는 청년층, 고령층, 여성,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 집단,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료가 혼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ASTE)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SLCET)는 시간당 임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조사하는 임금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임금이고 근로시간은 평소 1주간 근로시간을 조사하고 있어 정확하게 시급을 조사하기 어렵다. 이병희(2008)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임금과 근로시간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하고 보다 정확한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근로시간을 지불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과 비교 가능한 통상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을 추정치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할 수 있다[25].

연구방법론의 문제로서 최저임금 변화의 내생성도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거시경제 환경과 실업률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여건을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고용변화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외생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또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치·경제 상황이 나 시기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연구 등에서 이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²⁾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고용변화의 추세는 지역 또는 산업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도 연구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연구(예를 들어, [27])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³⁾

5. 결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중하위권에 속하며, 특히 최저임금노동자가 포

2) 경기침체기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26].

3) 홍민기(2018)는 기존 조사자료의 한계를 감안하여 다양한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자료)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산업별 고용추세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노동시간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된 가구들의 평균소득은 빈곤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굳이 외국과의 비교가 아니더라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는 2016년에 280만명(전체 노동자의 14.6%), 2017년에 313만명에 달할 것이라 추산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 적발되더라도 처벌 받은 비율은 1% 미만(2014년 0.97%)에 그치고 있다.⁴⁾

한편,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폭이나 고용효과에 관한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를 찾기는 쉽지 않다. 주요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최저임금이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국내 여건상, 외국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하여 그 경제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연구자들은 임금과 근로시간이 부정확한 여러 가지 조사자료들을 재가공하여 분석에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일한 자료라 할지라도 자료의 가공 형태나 연구모형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 변화의 내생성 문제,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고용률의 문제, 산업이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고용변화의 추세 문제 등이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고용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18]. 따라서 향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대안은 Card and Krueger(1994) 등에서 시도된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시기를 전후로 최저임금노동자들이 다수를 접하는 산업부문(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 대해 고용인과 피고용인을 직접 면접하여 임금과 고용률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경제상황과 고용추세를 반영하여 인상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해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축적된다면, 고용률의 감소를 줄이면서도 저임금노동자들의 형편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정 최저임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내년 300만명 넘어설 듯”(한국일보, 2016. 8. 16)

REFERENCES

- [1] H. K. Kim. (2015). Minimum Wages and Poverty Exit in OECD Countries. *Health and Welfare Foru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78-86.
- [2] S. B. Oh. (2015 April). Recent Trends in the US Minimum Wage System. *International Labor Brief*, Korea Labor Institute, 37-51.
- [3] C. Brown, C. Gilroy & A. Kohen. (1982).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2), 487-528. DOI : 10.3386/w0846
- [4] D. Card & A. Krueger. (1994).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48(4), 772-793. DOI : 10.3386/w4509
- [5] D. Neumark & W. Wascher. (2000).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90(5), 1362-1396. DOI : 10.1257/aer.90.5.1362
- [6] A. Dube, W. T. Lester & M. Reich. (2010). Minimum Wage Effects Across State Borders: Estimates Using Contiguous Count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2(4), 945-964. DOI : 10.1162/rest_a_00039
- [7] S. A. Allegretto, A. Dube & M. Reich. (2011). Do Minimum Wages Really Reduce Teen Employment? Accounting for Heterogeneity and Selectivity in State Panel Data. *Industrial Relations*, 50(2), 205-240. DOI : 10.1111/j.1468-232x.2011.00634.x
- [8] B. T. Hirsch, B. Kaufman & T. Zelenska. (2015). Minimum Wage Channels of Adjustment. *Industrial Relations*, 54(2), 199-239. DOI : 10.1111/irel.12091
- [9] B. Boockmann. (2010). The Combined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and Labor Market Regulation: A Meta-Analysis. *IZA Discussion Paper No. 4983*.
- [10] H. Doucouliagos & T. D. Stanley. (2009).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Wage Research? A Meta-Regression Analysi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7(2), 406-428. DOI : 10.1111/j.1467-8543.2009.00723.x
- [11] S. Nataraj, F. Perez-Arce, K. B. Kumar & S. V. Srinivasan. (2014). The Impact of Labor Market Regulation on Employment in Low Income Countries: A Meta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8(3), 551-572. DOI : 10.1111/joes.12040
- [12] M. L. Leonard, T. D. Stanley & H. Doucouliagos. (2014).

Does the UK Minimum Wage Reduce Employment? A Meta-Regression Analysi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2(3), 499-520.
DOI : 10.1111/bjir.12031

[13] D. Belman & P. J. Wolfson. (2014). The New Minimum Wage Research. *Employment Research*, 21(2), 4-6. DOI : 10.17848/1075-8445.21(2)-2

[14] S. Broecke, A. Forti & M. Vandeweyer. (2015). The Effects of Minimum Wages on Employment in Emerging Economies: A Literature Review.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5] G. Giotis & M. Chletsos. (2015). Is There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 Wage Research during the Five-year Period from 2010 to 2014? *Economics Discussion Papers, No 2015-58*,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16] S. K. Lee. (2007 June).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Minimum Wage. *Monthly Labor Review*, Korea Labor Institute, 43-51.

[17] B. H. Lee. (2008).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Job Loss and Job Entry.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14(1), 1-23.
DOI : 10.17005/kals.2008.14.1.1

[18] J. H. Jeong, J. Nam, J. Y. Kim & Y. J. Jun. (2011). Analysis of the Effect of Minimum Wage. *Research Series 11-2*, Korea Labor Institute.

[19] S. Nam. (2008). The Effects of Introduction of Minimum Wages on Labor Demand in Korea : An Empirical Study for Security Workers.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31(3), 1-19.

[20] D. I. Kim. (2012). 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New Hiring of Low-wage Workers.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35(3), 29-50.

[21] S. Kang & C. Park. (2015). Analysis of Employment Effect of the Minimum Wage Using Time Series Data.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38(3), 1-22.

[22] J. Lee & S. Hwang. (2016).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39(2), 1-34.

[23] Y. Kim & E. Kang. (2015). 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Informal Labor Market Outcomes.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5(3), 85-102.

[24] M. Kim, Y. Kim & T. Park. (2013). Minimum Wage Effect on Regional Employment.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3(2), 37-73.

[25] J. Park, H. Park & S. Kang. (2010). *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Low-wage Distribution and a Measure for Accurate Calculation of the Under*

Minimum Wage Ratio.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6] T. Boeri, P. Cahuc & A. Zylberberg. (2015). The Costs of Flexibility-Enhancing Structural Reforms: A Literature Review.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264*, OECD Publishing, Paris.
DOI : 10.1787/5jrs558c5r5f-en

[27] M. Hong. (2018). Employment Effects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in 2018, *Monthly Labor Review*. Korea Labor Institute, 43-56.

[28] T. S. Byun. (2016. 8. 16.). Workers Who Do Not Receive the Minimum Wage Will Exceed 3 Million Next Year. *Hankook-Ilbo*.

박 철 호(Park, Cheol Ho) [정회원]



- 1992년 2월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2005년 10월 : Univ. of Illinois(경제학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리스크관리, 파생상품,

행동재무학

· E-Mail : optimus@cbnu.ac.kr

강 상 구(Kang, Sang Koo) [정회원]



- 2000년 2월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 2018년 8월 ~ 현재 :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임연구원
- 관심분야 : 최저임금, 국제무역(전자상거래)
- E-Mail : iamgooya@hanmail.net